

1. (정답) 1

(해설)

- 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 ② 헌법 제12조 제2항
- ③ 헌법 제12조 제7항
- ④ 헌법 제27조 제5항

2. (정답) 3

(해설)

- ① 제243조의2 제1항
- ②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증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3항). 따라서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5항).
- ④ 제417조

3. (정답) 4

(해설)

- ① 제225조 제1항
- ② 대판 2001.10.9. 2001도3106
- ③ 제233조
- ④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0.9.30. 2008도4762).

4. (정답) 2

(해설)

- ㉠ 6(제230조 제1항)
- ㉡ 6(제194조의3 제2항)
- ㉢ 10(제262조 제1항)
- ㉣ 3(제262조 제2항 본문)
- ㉤ 7(제249조 제1항 제4호)
- ㉥ 7(제104조)

5. (정답) 4

(해설)

- ①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경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체포구속할 수 없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구속은 적법하게 된다.
-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긴급체포의 요건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수사주체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2.6.11. 200도5701).
- ④ 대결 1997.8.27. 97모21

6. (정답) 3

(해설)

- ① 대판 2009.5.14. 2008도10914
- ② 제216조 제3항
- ③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대판 2008.7.10. 2008도2245).
- ④ 대판 2010.1.28. 2009도10092

7. (정답) 2

(해설) 옳은 것은 ㉢㉤㉥이다.

- ㉠ 공소제기 후의 영장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명령장이다. 따라서 검사의 청구는 필요하지 않다.
- ㉡ 동일한 영장으로는 다시 집행할 수 없다.
- ㉢ 긴급집행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 ㉣ 제122조 본문
- ㉤ 제126조
- ㉥ 제134조

8. (정답) 1

(해설)

- ①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84조 제3항).
- ② 제184조 제1항

- ③ 대판 1988.11.8. 86도1646
- ④ 현재결 1996.12.26. 94헌바1

9. (정답) 4

(해설) ㉠㉡㉢㉣이 옳은 설명이다.

- ㉠ 대판 1999.3.9. 98도4621
- ㉡ 제326조 제3호
- ㉢ 제249조 제2항
- ㉣ 타당한 설명이다.
- ㉤ 우리 형사소송법은 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중단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10. (정답) 4

(해설)

- ① 대판 1984.9.25. 84도312
- ② 대판 1965.1.26. 64도681
- ③ 대판 1999.11.26. 99도2651
- ④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9.11.26. 99도2461).

11. (정답) 3

(해설)

- ① 제306조 제4항
- ② 제159조 제1호
- ③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에 해당하는 관계있는 자가 형사 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48조).
- ④ 타당한 설명이다.

12. (정답) 3

(해설) ㉠㉡㉢이 틀린 설명이다.

- ㉠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75조 제2항).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규칙 제76조 제2항).
- ㉡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76조 제4항).
- ㉢ 타당한 설명이다.
- ㉣ 타당한 설명이다.
- ㉤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대판 2010.1.14. 2009도9344).
- ㉥ 대판 2000.10.13. 2000도3265

13. (정답) 2

(해설)

-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③ 대판 2011.9.8. 2011도7106
-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14. (정답) 1

(해설)

- 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2012.11.15. 2011도15258).
- ②③④ 타당한 설명이다(2012.11.15. 2011도15258).

15. (정답) 1

(해설)

- 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1998.2.27. 97도1770)라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도 공판정 외의 진술에 의해 탄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신문을 증인신문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96조의2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77조 제1항에서는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

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신문에서도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② 대판 1989.10.10. 87도966
- ③ 대판 1994.11.11. 94도1159
- ④ 대판 2005.8.19. 2005도2617

16. (정답) 2

(해설)

②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이 상소기간을 재판서 송달일이 아닌 재판선고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과잉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1995.3.23. 92헌바1).

17. (정답) 4

(해설)

④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11.4.14. 2010도16939).

18. (정답) 3

(해설) ㉠㉡㉢이 옳은 설명이다.

㉠ 제432조

㉡ 대결 1987.2.11. 86도22

㉢ 대결 2009.7.16. 2005도472 전합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는 것이고 단순히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언은 위 '증거된 증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2005.4.14. 2003도1080).

19. (정답) 3

(해설)

③ 즉결심판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

20. (정답) 2

(해설) ㉡㉢㉣㉤이 옳은 설명이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동법 제26조 제1항

㉢ 동법 제31조 제1항

㉣ 동법 제25조 제1항

㉤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2항).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5항 본문).

㉦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不服)을 신청하지 못한다(동법 제30조).

㉧ 동법 제25조의2